

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상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407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7. 10.

발의자 : 이상민 · 이종결 · 이철희

김종민 · 어기구 · 박정

기동민 · 이용득 · 위성곤

김철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R&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R&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.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&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.

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‘전문기관 운영 효율화’를 제시하였고 (17.7.) 그 후속조치로 ‘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’(‘18.1., 경제관계장관회의)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‘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’(‘18.8.,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)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준 한국연구재단/정보통신산업진흥원/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

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.

일원화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R&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,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 하여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, 이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 정관 개정 및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화를 완료하였음('19.1.1. 시행, 이관 과정에서 기관 명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).

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,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「한국연구재단법」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(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).

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부설기관)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
제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부설기관) 재단은 정관</u> <u>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</u> <u>관을 둘 수 있다.</u>
제4조(정관)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 1. ~ 3. (생 략)	제4조(정관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3의2.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</u>
4. ~ 11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